

4. 都市再開發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5,359號 1997. 4. 25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이 개정(1997. 1. 13, 법률 제5288호)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 및 공원의 범위를 재개발구역지정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공시된 너비 20미터 이상인 통과도로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본문중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46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공원”이라함은 당해 재개발구역의 지정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로·공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이상인 통과도로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
 2.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 제52조제1항 중 “공인회계사법 제5조”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으로, “동법 제12조의 2”를 “동법 제23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